

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. 6. 14. 제 천 시 장
 나. 회부일자 : 2011. 5. 16.
 다. 상정일자 : 2011. 5. 22.(제18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보건위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등을 규정하여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-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(안 제2조, 별표)

부과대상	부과금액		
	1차	2차	3차
1.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한 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2.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·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- 과태료의 부과·처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, 제4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완식)

-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·공포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은
 - 지역보건법 제18조(건강진단등의 신고)와 제21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위반

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
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이상 300만원을
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으며

-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,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행정절차법 제20조와 제21조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고, 의무를 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행정 절차법을 준수하고 있으며
- 지역보건법 제26제2항은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·징수권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이견은 없습니다.
- 조례안 제2조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타 자치단체 과태료 부과기준 비교

1.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 진단등을 행한자 (법 제26조 제1항 제1호)

(단위 : 만원)

자치 단체명	부 과 기 준			비 고
	1차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
대다수 자치단체	100	200	300	법정한도액 300만원
서울시 은평구	30	50	100	
부산시 중구,동구	30	50	100	
대구시 남구,서구	50	100	200	
대전시 동 구	50	100	200	
경기 안산시	200	200	200	
충북 영동군	50	100	200	
충북 단양군	50	100	300	

2.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
(법 제26조 제1항 제2호)

(단위 : 만원)

자치 단체명	부과 기준			비 고
	1차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
대다수 자치단체	100	200	300	법정한도액 300만원
서울시 은평구	50	100	150	
부산시 중구,동구	50	100	150	
대구시 남구,서구	50	100	200	
대전시 동 구	100	200	300	
경기 안산시	200	200	200	
충북 영동군	100	200	300	
충북 단양군	100	200	300	

4. 질의 및 답변 (답변자 : 보건위생과장)

- 질의) 지역보건법 제18조와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한 실적은? (김꽃임 위원)
 답변) 없습니다.

5. 기타 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 1부. 끝.